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4/ 5/ 8 통권 167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익원장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는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p.11)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법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비교〉

개념구분	사업소득	이자소득
개념정의 관련규정	각종 사업행위소득(소득세법 제19조) 영리목적 자기계산 하의 계속, 반복적 행위 활동소득	각종 금융자본소득(소득세법 제16조) 금전사용의 대가성격, 비영업대금의 이익
특성구분	적극적 행위실적소득 active	소극적 금전제공이익 passive
지급상황 판단	소득자의 특정업무, 행위, 활동, 실적과 직접 연관됨 (통장에 실적소득으로 기재함)	소득자의 금전행위(가수금, 예금, 예수금, 보증금 등)와 직 · 간접 연관됨(통장, 전표 등에 이자배당으로 기재)
소득자 특성	영업담당자, 다수인, 단기업무	대주주, 경영진, 자금제공전주
지급자 원천징수	총지급액의 3.3%	총지급액의 27.5%(25%×1.1)
회계처리계정	판관비 중 지급수수료, 판매수당, 영업실적보수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 계정
수취자의 소득계산	총 수취액 - 실제 필요경비 (또는 기준경비, 단순경비)	총 수취액이 소득금액임 (대응비용, 관련경비 인정 안됨)
최종 납세부담정도	실제소요경비 대응으로 낮은 편 (3.3% 일부가 환급되기도 함)	대응경비 없이 고율 과세, 금융소득 합산과세 대상이며 다단계 세율 적용 후 25% 선납세액은 차감 공제됨)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74호 / 주간 19호 2024. 5. 8.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법인이 지급하는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비교	표지
CEO에세이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협력사 전산지원	4
	- 해외법인에 매출한 반제품 재반입시	
	- 부가세 초과 입금 회계처리 문의	5
	-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눈에맞는절세미인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6
매일절세재무요점	-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8
	- 종합소득세 신고방식 기준금액	9
직장인Survival	계획이 철저할수록 목표달성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10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⑶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11
	-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25, 2023.08.09)	12
세정뉴스와 해설	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700만명에 예상세액 · 모두채움 안내	13
마케팅 Tax consulting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는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2
세무정보	-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14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38
노무정보	-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4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3

보이지 않는 환경파괴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매연· 분진· 폐수 등 자연환경 오염도 큰 죄악이지만 더 무서운 게 사회환경 오염이다. 자연환경 파괴 행위는 대체로 결국에는 눈에 띈다. 하지만 사회환경 파괴행위는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개선 역시 잘 안된다. 양심이 마비된 채로 기업CEO의 묵인 또는 명에 의해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경영'되기 때문이다. '아프다, 아프다'는 뜻의 일본 말인'이타이이타이 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오래 전에 눈에 띄었다. 병의 혹독함에 세계가 놀라고 진저리를 쳤다.

1910년부터 일본 도야마현 광산 인근 하천 유역의 주민들 사이에서 심한 통증과 함께 팔과 다리뼈가 부러지며 뼈가 줄면서 키가 작아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1968년 5월에야 카드늄 중독이 그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경기도 광명시 가학 광산 주변의 토양과 그 곳에서 생산된 쌀 그리고 주민 혈액에서 카드늄이 검출된 바 있다. 이제 멀리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1991년 3월 대구지역시민의 식수인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조사결과 두산전자 구미공장에서 무단 방류한 페놀원액 30t이 낙동강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두산전자 페놀관리 담당자와 대구시 상수도 본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오히려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그래서 당시 두산그룹의 박용곤 회장이 물러났다. 공무원과 두산전자 관계자 여럿이 구속되고 징계 되는 등 유례없는 문책인사가 있었다. 또 환경처 장 차관이 인책· 경질됐다. 국민불매운동으로 두산의 주력기업 OB맥주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예전에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만 생각했지만 이제 얼마나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제품을 만드는지 소비자들은 따집니다."

헨켈의 레너회장의 말이다. 헨켈은 1876년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 화학기업이다. 그 후 두산은 '친환경 기업'으로 환골탈태했다고 언론에 크게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그 두산그룹의 오너형제는 분식회계· 비자금투서사건을 일으켰다. 대기업의 오너 형제간 재산과 경영권 분쟁은 오래간 보아온 사회병폐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범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그랬고 현대그룹을 놓고 숙부

와 조카며느리와 경영권 싸움이 그랬다. 웬만한 사람들도 죽은 부모의 재산 때문에 형제간 상속 싸움을 예사롭게 하는 세상이 됐다.

회계분식에 따른 검은 돈 횡령과 거래는 도덕 윤리와 사회질서 파괴라는 또 다른 사회조직과 생명 파괴 행위다. 이제 일어나는 벤처기업까지 회계분식을 자행하고 있다.

"못 된 송아지 엉덩이서부터 뿔 난다"는 한국 속담이 되뇌어진다.

기업의 회계분식은 사회부패 연결고리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 부패가 한국사회에 아직도 상당히 만연하고 있다는 실증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불가능하다.

광고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광고를 통한 언론매체 '관리'는 사회의 심한 아픔이다. 대기업들은 해외연수 등 언론인에게 간접지원을 벌여왔다. 그 대상은 방송과 신문사 간부와 대기업 관련 언론인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물론 사회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발전을 저해한다. 사회환경 파괴행위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4월 26일 (금)	4월 29일 (월)	4월 30일 (화)	5월 2일 (수)
미 달 러	(USD)	1376.60	1375.90	1378.70	1378.00
일 본 엔	(JPY)	884.79	869.12	882.68	886.17
영 국 파 운 드	(GBP)	1722.33	1720.08	1731.85	1726.84
캐 나 다 달 러	(CAD)	1008.02	1007.03	1008.93	1003.53
홍 콩 달 러	(HKD)	175.87	175.74	176.19	176.16
중 국 원	(CNH)	189.51	189.54	190.05	189.92
유 로 화	(EUR)	1477.09	1472.49	1477.48	1476.46
호 주 달 러	(AUD)	898.09	899.29	904.98	899.35
싱 가 폴 달 러	(SGD)	1013.10	1010.32	1013.82	1012.94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8.14	288.60	289.19	288.74

협력사 전산지원

Q 저희 물건을 가공해주는 협력회사에 전산시스템을 지원할려고 합니다. 개발비+장비료가 들어가는데 계정과목을 뭐로 해야할지요? 그리고 타회사에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안되는지 여부
(일부 전산장비는 몇년뒤 회수가능하더라도 무형의 개발비는 회수가 안됨)

A 타회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금품의 경우 귀사와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사라면 접대비로 처리하고 귀사와 업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협력회사라면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외법인에 매출한 반제품 재반입시

Q 당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로 중국 현지의 자사 해외법인에 자재(반제품, 원재료)를 납품하고 현지 조립에서 생산하여 현지의 자동차 메이커에 최종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의 제조회사 입니다.
최근 중국의 경기 침체와 판매 차량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지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사의 발주량 추이가 현지법인에서 단기간에 소화하기는 힘든 미미한 수량으로 나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부품으로 이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은 한국에서 중국현지 법인으로 23 '6월~23' 1월의 기간동안 공급된 것으로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매출을 취소해야 하는지, 또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매각, 당사는 매입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입니다.

A 중국 현지 자회사에 매출된 자재를 다시 반입하게 되는 경우 해당 반입거래가 매출취소인지 아니면 매출완료후 귀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거래인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귀사와 중국 현지 자회사간의 실제 계약내용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초과 입금 회계처리 문의

Q 업체에 운송비를 대납하고, 후에 청구하여 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운송비 대납금 처리를 제품 발주처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비 + 부가세10% 를 초과하여 입금받게 되는데 초과되는 부가세 10%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하기와 같이 잡이익 처리해도 될까요?
EX) 운송비 대납시 : 미수금 100 / 보통예금 100
운송비 입금받을 시 : 보통예금 110 / 미수금 100
잡이익 10?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운송비대납시 귀사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납하지 않는데, 회수시 부가가치세액만큼을 추가 받는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에 세금계산서 발행

Q 1. 법인이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요?
2. 관련 법규나 예규 알려주세요

A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인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이 개인이라도 발급해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 규정이 없으므로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상담실 백종훈 차장

2024년 5월31일까지 2023년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에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① 2023년도 중에 폐업하였더라도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매출액 4,8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근로소득자가 2023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였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여야 한다.

④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를 하였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

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부양하고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2023년에 사망하여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되어 제외되는 경우라도 2024년 5월 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2023년에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24년 5월 신고 때까지는 장애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차남이나 출가한 딸이라도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는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 한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자

연말정산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또는 작년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빼먹기 쉬운 공제항목은 미취학 자녀의 정규학원비와 정치자금 기부금, 따로 사는 부모나 장인·장모 인적공제(다른 형제들이 공제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기타소득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아니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합산과세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 기타소득금액과 다른 종합소득합산금액이 4,6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과세 대상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모든 수익
기본공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펀드 수익 5000만원까지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과세율	3억원 이하는 22%(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는 27.5%(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과세체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도입

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후 개인투자자 사례

투자한 금융상품	이익 · 손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1억원	소액주주라 과세 대상 아님	금투소득, 5000만원 공제 대상
해외주식	양도손실 5,000만원	비과세	금투소득, 250만원 공제 대상
ELS상품	투자이익 1,000만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라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水 종합소득세 신고방식 기준금액

업종별	기장의무의 판정			추계신고 유형	
	간편장부	복식부기		계속사업자	
		자기조정	외부조정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1.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미만	-	6억 이상	60백만원 이상	60백만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 미만	-	3억 이상	36백만원 이상	36백만원 미만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 미만	-	1억 5천 이상	24백만원 이상	24백만원 미만

木 국가별 반도체 산업 지원

중국(2014년~)	약 500억 달러(약 69조원) 기금 조성, 기업 소득세 면세, 수입관세 면제 등
미국(2022년)	390억 달러(55조원) 보조금, 세액 공제
독일(2018년~)	TSMC 55억 달러(8조 원), 인텔 110억 달러(15조원) 보조금 지급
일본(2022년)	반도체 사업 보조금 128억 달러(18조원) 이상

계획이 철저할수록 목표달성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에 실패하면 능력이 부족하거나 운이 좋지 않아서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재능이나 능력이 월등해서 부와 명성을 얻은 것 같지만, 그 바탕에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미국 최대의 할인매장인 월마트의 창업주 샘 월튼을 보고도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사실 그는 20년이라는 계획 기간을 거쳐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는 치밀한 경영전략이 있었다. 고객에게 싼값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원가절감을 통한 최저가 상품을 개발하는 저가전략을 세웠고, 틈새시장인 소도시와 외곽지역을 선정하여 5만 명 이하의 지역도 집중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선점의 전략을 발휘했다. 특히 직원들을 동업자나 친구로 대우하며 현장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고객접점부터 시작하는 등 선점과 생존의 치밀하고 철저한 전략을 구사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달성하기로 목표를 세웠다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지금까지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많았거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아서였는지도 모른다. 계획이 치밀하고 구체적일수록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최 신 판 례 예 규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조특령§23⑬(3)가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1052, 2023.10.12

▌질 의

• 질의인은 '20.0.00.부터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을 '22.0.00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전환한 법인에서 모두 승계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

질의

•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하고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6302, 2023.03.29

▌질 의

•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그에 기하여 신규주택 취득 시,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2020.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B), 이하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이자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귀속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는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325, 2023.08.09

▌질 의

• 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사전법규소득-416, 2023.10.11

▌질 의

•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

▌회 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 700만명에 예상세액 모두채움 안내

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의(국번없이 126 - 0번)에 연락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종합소득세를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5월 양도세 신고' 해외주식 투자자 또 늘고, 부동산은 침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투자자 중 해외주식 투자자가 또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명에게 내달 7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9일 밝혔다.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자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은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했지만, 소득금액을 더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투자자들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해 안내를 강화하고, 홈택스 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돕는다.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분 390만 가구 4.2조원…자녀장려금 두 배 증가

국세청은 오는 2일부터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급대상은 390만 가구로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으로 관측된다.

1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109만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요건은 꾸준히 확대 추세로 지난해 정기 신청 때는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지급액은 1조189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가구 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한다.

모바일 신청 안내문의 '신청하기', '큐알코드' 스캔, 1544-9944 ARS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1566-3636번 신청대리 및 자동신청을 이용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ARS · 모바일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4. 5

□ (신고개요)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 26.(금)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합니다.

○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 5. 31.(금)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라 함)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서비스 제공)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해드리며,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 · 대리운전기사 · 학원강사 · 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입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손택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 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AI 상담 시범운영)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합니다.

○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 · 군 · 구)에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지방소득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 31.(금)까지

□ (신고기간) '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금)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올해 7. 1.(월)까지 신고 · 납부해야 합니다.

* 업종별 '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①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제조업·음식업 등 7.5억 원, ③임대업·서비스업 등 5억 원

□ (안내문 발송) 신고 대상자에게는 4.26.(금)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 ·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리며,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 신고안내문 유형별 안내문 발송 일정 |

• 성실신고확인·외부조정 대상자	: 4. 26.	• 기준경비율 대상자	: 4. 29. ~ 4. 30.
• 자기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 4. 27.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 1. ~ 5. 3.
• 단순경비율 대상자, 비사업자	: 4. 28.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 1. ~ 5. 6.

□ (신고방법)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라 함)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06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06시부터 24시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5. 31.(금)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을 24시까지만 운영합니다.

□ (납부방법)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내해드리는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는 납세자가 부담

□ (동영상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2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로 간편하게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총 700만 명의 납세자에게 5. 1.(수)부터 보내드립니다.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	제조업·음식업 등	임대·서비스업 등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

□ (신고방법)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수정·제출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서 연결되는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에서도 확인 가능

3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

□ (맞춤형 신고화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합니다.

○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 · 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AI 상담사를 이번 신고에 시범 운영

□ (추진 배경)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합니다.

○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하여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문상담사 연결은 평일(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가능

□ (상담 방법)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하여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알려드리고,

○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해드립니다.

○ 다만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개별적인 질문이나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전문상담사들이 상담합니다.

/ AI상담사 상담 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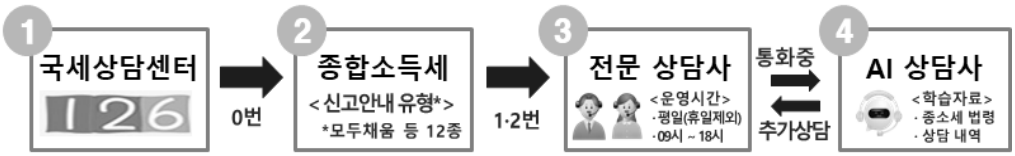

□ (향후 일정)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AI 상담을 정교화하고,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세청이 보유한 세법, 판례, 상담사례 등 다양한 자료의 학습을 통해 납세자의 세부적인 질문에도 원활히 응답할 수 있는 AI 상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납부

□ (신고개요)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지방 소득세
박**	820123-*...	보기	보기	km...	N	신고이동

※ 위택스 운영시간도 홈택스와 동일(①5. 1.~30.은 오전 1시까지, ②5. 31.은 오후 24시까지)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방법) 전자신고의 경우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도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버튼을 눌러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세액 조회 후 납부 가능

□ (납세편의)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지원합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인 경우 전국 228개 자치단체(시·군·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창구 위치는 위택스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드리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66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발굴하여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납부) 안내자)

◉ 2023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4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기한 내 신고 · 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년도('22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도·소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임대업, 서비스업 등 포함
6천만원	3천6백만원	2천4백만원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 · 군인 ·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등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 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안내

기장의무 판단

◉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원칙 : 직전연도(2022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이상자	1억5천만원 미만자	3천6백만원 이상자	3천6백만원 미만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이상자	7천5백만원 미만자	2천4백만원 이상자	2천4백만원 미만자

* 다만, 2023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⑤ 법(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 공동사업장의 경우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text{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text{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times \left(\frac{\text{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text{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right)$$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소령」§201의11⑩)

◉ 추계신고시 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①, ②, ③ 중 큰 금액)

① 무신고 납부세액×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기장의무 판단

◉ 간편장부는 무엇인가?

-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제정 · 고시한 장부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1-33호 (2021.07.21.)「간편장부 고시」)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1억5천만원 미만

다.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가'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욕탕업은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가산세_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간편장부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됩니다.

○ 간편장부 서식

①일자	②계정과목	③거래내용	④거래처	⑤수입(매출)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1.5	매출	○○판매	㈜ㅁㅁ	10,000,000	1,000,000					세계
1.15	상품	○○구입	△△상회			5,000,000	500,000			세계
1.20	접대비	거래처 접대	○○식당			200,000				카드등

○ 항목별 기재 요령

① 일자 :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② 계정과목 : 거래별로 거래의 성격에 맞는 아래 계정과목을 기재합니다.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입,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매도

③ 거래내용 : ○○판매, ○○구입 등 거래구분, 대금결제를 기재합니다.
1일 평균 매출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1일 동안의 총매출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등 원본 보관)
비용 및 매입거래는 거래 건별로 모두 기재합니다.

④ 거래처 :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 거래처 구분이 가능하도록 기재합니다.

⑤ 수입 : 상품 · 용역의 공급 등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10%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 란에 기재합니다.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그 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하고, 잔액을 '부가세'란에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 '금액' 란에 기재합니다.

⑥ 비용(원가관련 매입포함) : 상품 원재료 · 부재료 매입액, 일반관리비 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관련 비용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 '금액' 및 '부가세'란에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만 기재합니다.

⑦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증감(매매) : 건물 · 자동차 · 컴퓨터 등 사업용 유 · 무형자산 매입(설치 · 제작 · 건설 포함)액 및 부대비용을 기재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 시에는 ⑥번의 기재방법을, 매도 시에는 ⑤번의 기재방법을 준용하여 기재합니다.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기재합니다.
계산서와 상기 이외의 영수증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 란에만 기재합니다.

* 사업용 유·무형자산을 매각(폐기 등)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 △표시를 합니다.

⑧ 비고 : 거래증빙 및 대금결제 유형, 재고액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세계'로, 계산서는 '계'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카드등'으로, 기타 영수증은 '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유형은 현금, 외상, 카드 등으로 기재합니다.

상품 · 제품 · 원재료의 재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실지 재고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기재합니다.

* 재고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의 재고액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부금,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작성요령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간편장부를 각각 작성)
- 2개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합니다. 즉 각 사업장별 간편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가. 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라"의 신고서와 "나"와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및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기장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 장부 및 증빙서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상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법정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업종별 간편장부 작성사례

업태(업종코드)	간편장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식 작성사례			비고
	사업유형	업종	업종코드	
제조업(151101~381007)	과세/일반과세자	스크린인쇄업	(222102)	
건설업(451101~453000)	과세/일반과세자	인테리어	(45210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과세/일반과세자	건설장비운영	(453000)	
도매업(512111~519992)	과세/일반과세자	의류도매	(513121)	
소매업(521001~525912)	과·면세겸업/ 일반과세자	마트	(522071)	
숙박업(551001~551017)	과세/일반과세자	모텔	(5510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음식업(552101~552309)	과세/일반과세자	한식	(552101)	
운수업(601000~641201)	과세/일반과세자	개별화물운송	(602310)	
부동산임대업(701101~701504)	과세/일반과세자	상가임대	(701201)	
교육서비스업(809001~809022)	면세사업자	태권도학원	(80901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22102~922204)	과세/간이과세자	자동차전문수리	(92220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스포츠 및 오락관련서비스업 (924101~924917)	과세/간이과세자	노래방	(924903)	
인적용역(940100~940929)	인적용역사업자	학원강사	(940903)	

※ 주요 작성사례와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유사한 업종을 참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1 경비율제도 의의

○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복식부기장부 또는 간편장부)하여야 하고 기장내용을 집계한 재무제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을 소득세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 고의 또는 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거나 기장했더라도 주요부분이 허위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대비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 수단으로

○ 종전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단계에서 기장단계로 연결해 줄 중간단계로서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

2 경비율의 이해

○ 경비율제도는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기타경비는 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경비율과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단순경비율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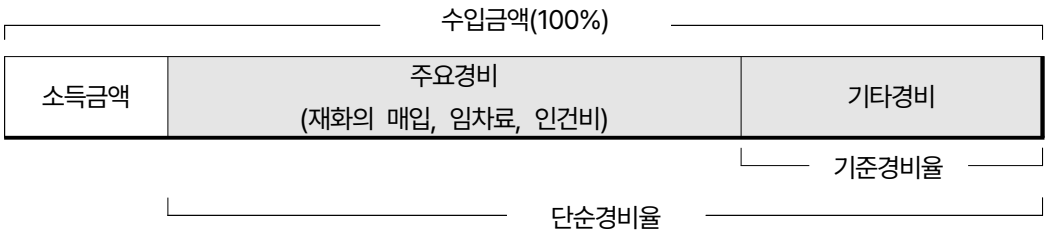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증빙수취의무가 한층 강화되어 있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수취 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

3 경비율 적용

○ 아래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신규사업자 중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령 §143③,④)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금액 미만이고 해당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미만인 자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령 §143⑦)

업 종 별	기준·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 (직전연도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해당년도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미만	3억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백만원 미만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미만

* '23년 귀속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 3천6백만원을 적용

○ 추계결정(경정)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조특법§128조①)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4 기준수입금액 계산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소득령§143⑥, §208⑦)

$$\text{주업종 수입금액} + \text{주업종외 수입금액} \times \frac{\text{주업종 기준금액}}{\text{주업종외 기준금액}}$$

* 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말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소득령§208⑤2, §143④2)

○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포함(소득령§144③)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즉, 공동

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를 적용하며(소득세법§87③),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소득세법 기본통칙70-0…2③)

○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서면1팀-707, 2006.5.30.)
단, 피상속인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5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특례

○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방문판매사업자는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고 연말정산을 대행할 지급자가 있어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고(소득세법§73①4, 소득령 §137①), 연말정산 시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산출 가능(소득세법 §144의2①, 소득령§201의11④, 소득칙§94의2)

연말정산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소득율(1-단순경비율)

구 분	업종코드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4천만원이하분	4천만원초과분
보험모집인	940906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940908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940907	80.0%	72.0%	20.0%	28.0%

○ 연말정산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사업소득을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연말정산 시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음(소득령§201의11⑩)

6 단순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함(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임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단순경비율에 단순소득률의 20%를 가산함
(장애인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 적용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함

* 적용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45백만원인 서적방문판매원(940908)의 경우
소득금액 : {40,000천원 - (40,000천원×75.0%)} + {5,000천원 - (5,000천원×65.0%)} = 11,750천원

7 기준경비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구 분	추계 소득금액 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시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함(소득령§143③1호 다목 단서)

* 적용례
건축사업(코드 742105) 운영업자의 2022년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소득세 추계신고시 기타경비는 2022년 기준경비율 21.0%의 1/2인 10,500,000원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의 사유로 소득세법§70④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 조특법§128②해당 감면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 결정(경정)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소득세법§80③에 따라 추계로 결정하는 경우 조특법§128① 해당 세액공제가 배제됨

○ 급격한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소득상한 배율 적용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

한 금액을 상한소득으로 함(소득칙 §67)

추계소득금액 계산(①, ② 중 적은금액)
①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 × 배율

귀 속 / 기장의무	2007	2008	2009	2010-2015	2016-2019	2020-2024
간편장부대상자	2.0배	2.1배	2.2배	2.4배	2.6배	2.8배
복식부기의무자	2.4배	2.6배	2.8배	3.0배	3.2배	3.4배

【문】 제조업(단일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21년도 수입금액이 4억원, 2022년 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일 때 추계소득금액은?
(장애인이 아닌 임차사업장으로서 기준경비율 : 20%, 단순경비율 : 75%, 배율 3.4배)
주요경비 합계액은 68백만원이며,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기초재고 및 기말재고가 없다.
• 주요경비 내용 : 매입비용(41백만원), 임차료(12백만원), 인건비(15백만원)

【답】 40,000,000원

【분석 및 소득금액 계산】
- 직전연도(2021년도) 수입금액이 제조업으로서 4억원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기타경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의 1/2를 적용하며, 배율은 3.4배를 적용한다.
• 추계소득금액 (①, ② 중 적은 금액) : 40,000,000원
① 120,000,000 - 68,000,000 - (120,000,000×20%×1/2) = 40,000,000
② {120,000,000 - (120,000,000×75%)} × 3.4 = 102,000,000

8 경비율 적용시 유의사항

○ 경비율의 적용은 사업장별 · 업태별· 종목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대해 적용함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자가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함(사업용건물의 임차료와 감가상각비 평균적 차이 비율 감안)

•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 기준경비율의 일반율 + 0.4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 단순경비율의 일반율 - 0.3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 다만 아래 업종에 대해서는 자가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임업 및 어업(011000~052200), 광업(101000~143107),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401000~403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410000, 410001), 건설업(451101~453000), 도매 및 소매업(522099, 523132, 525200), 운수 및 창고업(601000~621001, 630301~630302, 630305~630501, 630701~630909, 641201, 749906), 금융 및 보험업(659201~659900, 659902~672001, 749904), 부동산업(701101~701504, 703011~703024, 92140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30000~730008, 741108, 749941),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43200, 630304, 701600, 712100~713006, 749934, 930903), 인적용역(940100~940929), 기타 개인서비스(701700, 950000), 가구 내 고용활동(950001)

○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동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즉, 공동사업자의 분배된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율로 각각의 소득자에게 분배함

9 주요경비*

*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제2021-54호), 2021.9.15.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함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참고사항
1.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대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 대금임
2. 원재료 매입 관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하고, 환급 관세는 매입비용에서 차감
3. 원재료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비용에서 차감함
4.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함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 .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⑥ 기부금 등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금액(서면1팀-1059, 2005.9.6)

○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함
· 리스료(금융리스, 운용리스)는 임차료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960, 2007.7.6)
·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백화점 등에 입점한 업체가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백화점 등에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소득세과-1405, 2009.09.11)
·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넷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오픈마켓 운영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매입비용 ·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고시 제2015-9호)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4, 2016.01.29.)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참고사항
1. 인건비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금·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함(비과세분 포함)
2.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등과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 피복 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3. 사업소득인 자동차판매원에 대한 수당은 주요경비(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음(서면1팀-88, 2007.1.15)

○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주요경비에는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포함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재고매출환산금액에 직전연도 주요경비율(단순율-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할 수 있음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10 주요경비의 증명(소득령§143⑤)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 정규증명서류
-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정규증빙을 수령하지 않은 금액

·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정규증빙수취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

음

○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의 증명서류

- 급여· 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 증명서류 중 정규증빙수취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별지 제40호 서식(1) 제25쪽]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하여야 함.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세요

– 국세청, 2024. 3

□ (신고개요)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 대상)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11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5월 7일부터 발송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8만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

○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신고·납부)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월31일과 7월31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가능금액)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분, 2천만 원 초과 시 : 전체 세금의 50%

□ (신고 도움)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영상을 따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을 단계별로설명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숏폼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 '숏폼 영상'

○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5.3.개통)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5.3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인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한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23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2]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1)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 '23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4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

자산		예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
종류	세부 항목		1회	2회		
				합산[1]	미합산[2]	
부동산 등	• 부동산(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 기타자산(회원권 등)	1	×	-		◦
		2	◦	◦		×
		3	◦		◦	◦
주식 등	• 국내주식 등[3]	4	×	-		◦
		5	◦	◦		×4)
		6	◦		◦	◦
	• 국외주식	7	예정신고 의무 없음			◦
파생상품	• 파생상품	8	예정신고 의무 없음			◦

1)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신고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주주
4) 단,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 (안내대상자)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11만 명*입니다.

*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8만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

참고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

구 분	제공 내용
부동산 등	▪ 양도 부동산 취득가액·양도가액 등(등기부 기재사항)
	▪ 현금 영수증 자료
	▪ 취득세(등록세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공 통	▪ 예정신고 안내 물건, 예정신고 자료, 감면신고 내역,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서 등

□ (내비게이션 서비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부터 납부까지 순차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로그인하면 팝업되어 안내문, 과거 신고내역, 신고 도움서비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작성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5월 3일부터 제공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도움 자료 조회〉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24.3월부터는 납세자별 가상팩스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확정신고〉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①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첨부하기' 클릭

②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가상 팩스번호 발급' 클릭

참고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모바일)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PC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후 첫 화면에 뜨는 내비게이션에서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거나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용) 국세청 손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5. 30.) * 신고 마지막 날(5. 31.)은 24:00까지 운영 ◦ 확정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숏폼 영상 제공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①양도인·양수인 입력방법, ②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입력방법, ③세액계산 및 확인 입력방법, ④신고서 제출방법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확정신고〉(화면 우측) '숏폼 영상'
우편신고 · 방문신고	◦ 신고기한: '24. 5. 31.(금)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참고 4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안내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금융·간편·생체인증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타인의 세금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타인세금납부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앱카드(KB국민, 삼성, 신한, 현대, NH농협, 롯데)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공동·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국세〉자진납부를 선택하여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CD/ATM) 국세/지방세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0126'으로 시작하는 국세납부번호(19자리)로 조회하여,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1개의 카드로 전액 납부, 분할납부는 불가함) ◦ (인터넷뱅킹) 공과금(국세/지방세등) 납부,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ARS)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가상계좌)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1 (부동산 합산신고) '23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 납부한 경우

○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24%-5,760	38%-19,940
산출세액	47,510	8,640	70,310
기신고·결정세액	-	-	56,150*
납부할세액	47,510	8,640	14,160

*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 원) = 47,510천 원 + 8,640천 원

○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10,000	17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10,000	16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	38%-19,940
산출세액	47,510	-	43,710
기신고·결정세액	-	-	47,510*
납부할세액	47,510	-	△3,800

*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2 (국내 · 국외주식 손익통산) '23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 - 15,000	25% - 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3 (국내주식 합산신고) '23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 납부한 경우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23.8월 (일반법인 대주주)	'24.2월 (일반법인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누진공제	20% - 0	20% - 0	25%* - 15,000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4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천 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계
양도소득금액	200,000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참고 6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1 주식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10억 원 이상), 코스닥(2%·10억 원 이상), 코넥스(4%·10억 원 이상) ·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소득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 이후 양도분) *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세 율	· 국내주식: 10%, 20%, 20%~25%, 30% 대주주(상장·비상장) / 과세표준 기준* / 20~25% / 중소기업 외&1년미만 / 30% 소액주주(상장 장외·비상장) / 중소기업 주식 / 10% / 중소기업 외 주식 / 20%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2 파생상품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세 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 해당없음
신고납부	·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4. 5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4.2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부동산·동산·예금 등)에 대한 조사를 한층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① 및 구속수사를 강화②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신청
②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며, 악의적인 체불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숨어있는 체불까지 찾아내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과 특별근로감독은 임금체불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24.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4,075억 원)에 비해 40.3% 증가한 상황이다.

* ('24년 월별 누계 체불액 증감률) (1월) 64.1%↑ → (2월) 59.3%↑ → (3월) 40.3%↑
('24년 월별 누계 피해근로자 증감률) (1월) 38.8%↑ → (2월) 29.7%↑ → (3월) 18.1%↑

한편, 일부 사업주가 대지급금으로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22.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신청이 있는 경우 4대 보

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체불근로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대체하는 만큼 공신력 확보가 중요

또한, 다수인(10인 이상)의 대지급금 지급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의 규모도 확대(100→150개)할 예정이다.

* '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 올해는 규모를 확대하여 실시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간 지적되어온 낮은 벌금형 등 형사벌의 한계를 보완하여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23년 5월)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23년 6월)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임금체불죄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